

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10. 11. 5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10. 11. 8.
- 상 정 일 : 2010. 11. 11.(제176회 임시회 산전위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한방경제과장 이주식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 자금을 용자추천하고 그 용자금 이차 4.0%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이차부담을 완화
- 기업체당 용자한도액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업체당 추천 용자한도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(안 제8조 제1항제1호)
- 이차보전금리는 연 3.5%에서 4.0%로 확대(안 제8조제1항제2호)
-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시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금리 역마진을 차단하는 단서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한도액 및 이차보전금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

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.
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(용자조건) 제1항 제1호에서 기업체당 추천 용자한도액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확대 하였으며
- 안 제1항 제2호에서 이차보전금리를 연 3.5퍼센트에서 4.0퍼센트로 확대 하면서,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시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금리 역마진을 차단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.
- 본 일부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리의 육성자금을 더 많은 기업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
- 이차보전금지급조례에 근거 40점이상 기업체에 한하여 용자추천 대상 기업체로 추천하고 있으나 기업체별 담보, 신용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체가 발생 (현재 추천대비 대출을 62%정도) 되고 있으며
- 또한, 단서조항에 따라 적용할 경우 업체별 적용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은 기업체는 이자 없이 용자금만 받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(현재 기업별 이자율이 최저 4.6%에서 최고9.3%까지임)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용자한도액 상환기간과 중소기업 운영 가동중지시 이차보전금 처리 방안은?(양순경 위원)
- 용자금 이자 보전비율을 4.0%로 상향하게 된 이유와 이자율 하락시 업체가 제로금리로 대출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?(김명섭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>

-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용자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임. 업체 부실운영의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게 되며 이에

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협약시 구체적으로 정하겠음.

-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기업체의 건의가 있었음.
4.0%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금리 역마진이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